

	<h2 style="margin: 0;">성희롱·성폭력 예방규칙</h2>		규정번호	3-4-8
			제정일자	2001.03.02
			개정일자	2017.09.01
			개정번호	Ver.5 총페이지 5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제2조(성희롱·성폭력의 정의) ① 성폭력은 「형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하며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② 성 차이에 따른 위협적, 적대적,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형 성폭력 역시 본 규칙에 적용된다.

③ 공적인 생활에서의 성 차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 역시 성폭력으로서 본 규칙에 적용된다.

④ 성희롱·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.<개정 2017.09.01.>

⑤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09.01.>

1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<신설 2017.09.01.>
2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<신설 2017.09.01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본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(교원, 직원, 조교,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.)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제4조(고충상담창구) ①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상담창구”라 한다)를 보건실 내에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<개정 2017.09.01.>

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총장이 지정하되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고충상담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<개정 2017.09.01.>

제5조(고충상담창구의 업무) 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09.01.>

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<개정 2017.09.01.>
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<개정 2017.09.01.>
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4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업무 <개정 2017.09.01.>

②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6조(고충상담의 신청)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·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, 전화, 통신,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7.09.01.>

제7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.<개정 2017.09.01.>

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, 연령, 용모, 주소, 소속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7.09.01.>

③ 신고인과 피의자 보호는 제8조 2항에 준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④ 총장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⑤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8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.<신설 2017.09.01.>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.<신설 2017.09.01.>

③ 조사는 서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.>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를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.>

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.>

⑥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⑦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 방법을 통

해 알려주어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9조(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)

- ①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09.01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09.01.>
-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학생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그 외 위원은 본교 교원, 직원,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한다.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한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. <신설 2017.09.01.>
-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9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- 1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규칙의 제정 및 폐기 <신설 2017.09.01.>
- 2.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사안의 처리 <신설 2017.09.01.>
- 3.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조사 결과 및 징계 <신설 2017.09.01.>
- 4.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<신설 2017.09.01.>
- 5.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<신설 2017.09.01.>
- 6.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신설 2017.09.01.>

제9조의3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-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<신설 2017.09.01.>
-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10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09.01.>

- ② 위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11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<신설 2017.09.01.>

제12조(징계) ①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적용하되 그 범위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1. 실명 공개 사과
2.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
3. 상담소 등의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활동
4. 대자보, 언론, 공문을 통한 경고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09.01.>

③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④ 성희롱·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13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총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③ 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,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제14조(총장의 책무) ① 총장은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·운영, 고충처리절차의 마련,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, 소속지원에 대한 홍보, 예방교육 참석, 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②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및 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9.01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성폭력 예방규칙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